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11.2		16		
2	2018.10.22		17		
3	2020.7.13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의 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'심의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10.22>

제2조 (직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8.10.22>

1. 투자지침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제3항에 따른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10.22>
3. 기금 운용 평가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 및 기타 자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18.10.22., 2020.7.13.>

제3조 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심의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심의회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단, 외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4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서기와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재무팀의 자금관리 담당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.

<전문개정 2018.10.22>

제4조 (임기)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8.10.22>

제5조 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8.10.22>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 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매 학기 초에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② 기금운용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항 신설 2020.7.13>

[중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<2020.7.13>]

③ 심의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8.10.22.>

[제2항에서 이동 <2020.7.13>]

제7조 (서면결의)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 (회의록)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,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심의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<개정 2018.10.22., 2020.7.13>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 (관련부서의 협조) 심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0.22>

제10조 (비밀유지 의무) 위원은 심의회 활동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8.10.22>

제11조 (자문단) ① 자금운용의 전문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·외부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단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.

제12조 (경비 등의 지급)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8.10.22>

제13조 (사무관장) 심의회의 사무는 사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8.10.22>

제14조 (기타 사항)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8.10.22>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